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4521 |
|----------|-------|

발의연월일 : 2025. 11. 25.

발 의 자 : 박지혜 · 최민희 · 위성곤  
허영 · 안도걸 · 권향엽  
박정현 · 최혁진 · 이주희  
이병진 · 이재강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공동체 중심의 재생에너지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주민소득 증대, 에너지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 공익적 가치가 높아 정책적으로 보호·육성할 필요성이 큼.

그러나 현행법은 송전·배전설비 이용에 관한 ‘비차별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어, 규모가 작고 지역공동체 기반의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분산형 재생에너지사업이 대규모 설비 위주의 계통 운영 구조에서 구조적 불이익을 받으며, 지역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이 필요한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한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해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기반 소규모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되는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의 경우에는 전력계통의 안정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①<br>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①<br>-----<br>-----<br>-----<br>-----<br>-----<br>-----<br><u>.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되는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의 경우에는 전력계통의 안정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u> |
| ② ~ ④ (생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